2023학년도

배움과 나눔으로 삶을 즐기며 꿈을 가꾸는 익산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2023.3.22.(수)

익 산 초 등 학 교

익산초 교육의 방향

1. 교육비전

배움과 **나눔**으로 삶을 **즐기며** **꿈**을 가꾸어 가는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배움을 통해 꿈을 가꾸는 학생	사랑과 열정으로 보람을 찾는 선생님	믿음과 소통으로 지원하는 학부모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역사회

2. 교육목표

교육목표	목표 내용	추구하는 인간상	본교인성 핵심가치	핵심역량
교육목표1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어린이	자주인	꿈	자기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교육목표2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움을 창출하는 어린이	창의인	배움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교육목표3	자연과 문화예술을 즐기는 어린이	문화인	즐김	심미적 감성역량, 대인관계 역량
교육목표4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민주인	나눔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이해 역량

3. 학교 중점 교육활동

중점 교육활동	주요 내용	관련 가치
1. 건강한 신체놀이와 체험활동 강화	* 교내 스포츠클럽 활성화 * 방학 중 건강 체력 증진 교실 운영 * 체험중심 안전교육 활동 * 전통문화 체험 확대 *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 지역축제 참여 및 진로체험	꿈, 즐김
2. 꿈과 배움의 열정을 심어주는 학생복지 강화	*교육복지 중점학교 운영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안심알리미, 학부모회) *학생 자치활동 강화 *안전 먹거리 중심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다문화 교육 및 특수교육 강화	나눔
3. 삶의 주인공이 되는 독서교육 강화	*책 읽어주는 선생님 *신입생 책꾸러미 사업 참여 *책과 놀자(온작품 읽기, 다양한 독서행사) *도서도우미, 명예사서 활동(학생, 학부모)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학생, 교사)	꿈, 배움
4. 미래교육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강화	*익산미래교육특구사업 참여 *지역교사연구회 참여 *배움과 성장의 날 운영(매주 수) *동료장학(수업나눔) 강화	배움

2023학년도 출결 처리 규정 안내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 출석인정 결석 - 증명자료 제출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산업체실습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 학교장이 승인한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에 따른 등교중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입양	학생 본인	20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질병 결석 - 결석계와 증명자료 제출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3일 이상의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미인정 결석 - 결석계 제출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4) 기타 결석 - 결석계와 학부모 확인서 등 증명자료 제출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1/3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위의 2)항의 경우 당해 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교외체험학습 관련

1) 기간 : 공휴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내용: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실천중심 체험학습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함**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 환산)

5)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전) 및 가정학습 신청(1일전)→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종료 후 면담 등을 통해 확인)

3. 출결 처리 증빙 자료

구분	출결처리	출석부 증빙 자료
2일 이내 질병결석	결석	결석계
3일 이상 질병결석	결석	결석계+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 해당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기타 결석	결석	결석계+학부모 사유서
경조사 결석	출석인정	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신청서+교외체험보고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가정체험학습' 포함)
가정학습	출석인정	가정학습신청서+가정학습보고서 **(연15일)**
법정 전염병	출석인정	진료확인서, 처방전, 관련기관확인서, 확진 또는 격리확인서, 신속확인검사확인서, 보건소 문자내용 복사본, 보호자 확인서 중 **택 1**

※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확인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 시: 신청서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안내

1 추진 배경

1.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
2.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후·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 발생
3.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
   (※ 동일시간대에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2개 이상의 돌봄 기관에 등록하여 이용하지 못한다)

2 운영 방향

1. 오후돌봄은 1, 2학년 학생 중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신청자가 많은 경우, 학교가 정한 우선 순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희망 우선 순위에서 제외됨
   나. 증빙 내용이 허위일 경우 돌봄교실 참여가 제한됨
   다. 같은 순위의 경우 저학년을 우선 수용
   라. 같은 순위의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을 우선 수용
   마. 오후 3시 이전에 조기 귀가하거나 돌봄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돌봄교실 이용이 제한됨
   바. 이른 학원 수강, 잦은 외출이나 결석, 중도 무단 이탈자는 제외됨(중도 포기자는 재입실이 제한됨)
2. 2023학년도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1일에서 2024년 2월 29일로 한다.
3. 방학 중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기 중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재량휴업일에는 학부모 수요와 학교의 여건을 바탕으로 운영).
4. 오후돌봄 및 방학돌봄은 직영으로 운영하며 저학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및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 돌봄전담사가 다양한 단체 및 개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별활동 지도 강사가 2개의 특별프로그램(미술 1시간, 놀이체육 1시간)을 운영한다.

3 세부 운영 계획

1. 운영 개요

유형	운영 시간		장소	수용인원	간식비
오후 돌봄	학기 중	방과후~17:00	전용교실 2학급 운영	교실당 정원 20명 내외 (최대 22명)	오후돌봄 참여학생 전체 간식비 무상 (1일 1인 2천원 지원)
	방학 중	오전반 9:00~13:00	전용교실 1학급 운영		
		오후반 13:00~17:00	전용교실 1학급 운영		

※ 과일간식 지원사업(익산시청 지원)은 예산 사정으로 인해 종료

2. 돌봄교실 예산(27,000,000원)
   가. 교육청 교부금: 22,800,000원
   나. 지자체 보조금: 4,200,000원

3. 돌봄교실 운영시간표
   가. 돌봄교실 아름반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12:50~13:50	책 읽기 숙제 지도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책 읽기 숙제 지도
14:00~14:40	개인 및 단체활동	개인 및 단체활동	미술 (외부특강)	개인 및 단체활동	개인 및 단체활동
14:50~15:30	개인 및 단체활동	개인 및 단체활동	개인 및 단체활동	개인 및 단체활동	놀이 체육 (외부특강)
15:30~16:30	간식지도 및 교구 활동				
16:30~17:00	활동 마무리 및 정리 정돈, 귀가 지도				

   나. 돌봄교실 다운반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12:50~13:50	책 읽기 숙제 지도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책 읽기 숙제 지도
14:00~14:40	개인 및 단체활동	개인 및 단체활동	개인 및 단체활동	개인 및 단체활동	놀이 체육 (외부특강)
14:50~15:30	개인 및 단체활동	개인 및 단체활동	미술 (외부특강)	개인 및 단체활동	개인 및 단체활동
15:30~16:30	간식지도 및 교구활동				
16:30~17:00	활동 마무리 및 정리 정돈, 귀가 지도				

4 기대효과

1. 다양하고 질 높은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및 사교육비를 경감
2. 양육 부담 완화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
3.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성교육과 정서교육 함양에 기여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1 세부 운영 계획

가. 운영 기간 : 2023년 3월 2일 ~ 2024년 2월 29일

구 분	운 영 기 간	비 고
1학기	2023년 3월 2일~ 2023년 8월 22일	방과후학교 여름방학 2023년 7월 27일~ 7월 31일(3일)
2학기	2023년 8월 23일~ 2024년 2월 29일	방과후학교 겨울방학 2024년 2월 28일~2월 29일(2일)

나. 방과후학교 수업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3:10 ~ 13:50	월금 A				월금 A
14:00 ~ 14:40	월금 B	화수목 A	화수목 A	화수목 A	월금 B
14:50 ~ 15:30	월금 C	화수목 B	화수목 B	화수목 B	월금 C
15:40 ~ 16:20		화수목 C	화수목 C	화수목 C	

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부서	요일	반	장소	수강료	부서	요일	반	장소	수강료
미술1	월,금	A B C	미술1실	27,000 (8,000)	미술2	화,수,목	A B C	미술2실	30,000 (12,000)
컴퓨터1	월,금	A B C	컴퓨터실	26,000	컴퓨터2	수,목	A B C	컴퓨터실	26,000
창의과학	월,금	A B C	창의과학실	26,000 (15,000)	영어	화,수,목	A B C	영어실	29,000
창의독서	월,금	A B C	창의독서실	26,000	주산암산	화,수,목	A B C	주산암산실	28,000
로봇과학	월,금	A B C	로봇과학실	26,000	창의수학	화,수,목	A B C	창의수학실	29,000
피아노1	월,금	A B C	피아노1실	27,000	피아노2	화,수,목	A B C	피아노2실	30,000
바둑	월,금	A B C	바둑실	26,000	성장체육	화,수,목	A B	소체육실	26,000
* 부서 특성에 따라 교재 및 교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방과후학교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 운영 중점방향

○ **‘즐거운 학교, 행복한 아이’** 비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충전소**(시너지)**

○ **시나브로**-조금씩 조금씩 스스로 꿈을 찾아 성장하는 **자발성 프로그램** 지원

○ **너나들이**-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라서 더 좋은 **교육복지 가치 실현**

○ **지렛대-작은 힘을 큰 힘으로 바꾸는** 공동체로 서로서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 **꿈이 자라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꿈자람’ 교육복지 비전 및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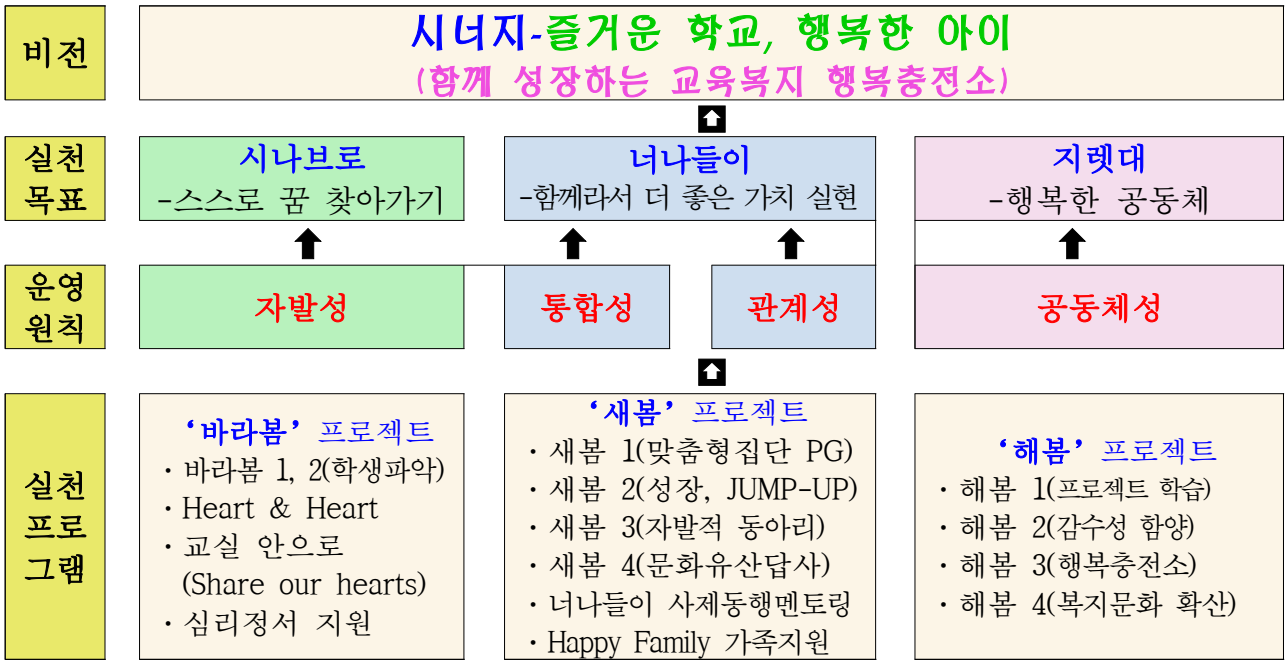

2. 추진 과제 설정

○ **바라봄ㅡ학생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면담(학생, 학부모, 교사)을 통한 학생 파악 및 대상 학생 종합적 이해

-학생 파악을 기반으로 대상 학생 특성(발달상황, 문제행동, 가정환경, 욕구와 강점)에 따른 개별 지원계획 수립,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

○ **새봄-학생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집단 활동 및 자기 주도 동아리 운영**

-자기 효능감 및 성취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기회 마련

-청소년 자기 주도 포상제 활동 및 체육, 댄스 등의 학생 중심 활동 기회 확대

-학생을 둘러싼 가정환경을 들여다봄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FAMILY empowerment 지원

-학생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으로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토대와 자기 주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해봄-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운영으로 교육 기반 구축**

-학년별 협의회와 교육과정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학년별 발달단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복지 가치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운영

∘ **교내 교육복지 추진체계 활성화와 학생 지원체계구축 및 운영으로 학교 교육복지 문화 조성**
-사례관리팀, 학년별 협의회 정례화(학교 교육과정 명시)
-교원의 교육복지 이해 연수 및 역량 강화 연수 기회 제공

∘ **지역사회기관 연계 활동으로 학교와 지역의 공동체 문화 조성 활동 강화**
-학생이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복지문화 확산
-지자체 및 민간 지역사회기관과 학생 지원을 위한 상시 협력, 협의체 운영
-학교-지역사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의 장 마련

3. 주요 활동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학생파악	'바라봄' 프로젝트	학생 파악 및 발굴, 학생 면담, 교육복지 교육, 가정방문	상시
맞춤형지원	'새봄' 프로젝트	사례회의, 너나들이 사제동행멘토링, 상담	연중
		맞춤형 집단프로그램 -자기조절향상, 사회성향상, 집중력향상, 또래관계향상, 자아존중감향상, 자기표현력향상	학기 중
		방학엔 뭐 할래~, 성장프로젝트, JUMP-UP체험활동	
		청소년 자기주도포상제활동, 자발적동아리(댄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궁궐을 걷는 시간)	
		FAMILY empowerment(해피패밀리) 가족지원	
		학교생활지원, 긴급지원	
환경조성	'해봄' 프로젝트	교과연계 프로제트활동, 감수성함양, 인성교육, 성장학급지원(행복충전소),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기 중
운영지원	'꿈자람' 교육복지	협의회 및 쉼터 운영	연중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최근 우리 사회는 성의 자유화와 개방풍조로 인해 인터넷 음란물, 드라마, 광고 등을 통해 성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들이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의식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문화를 가꾸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읽고 대화하면서, 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음란물과 음란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음란물은 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중독되는 특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음란물에 나오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음란물, 음란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 컴퓨터 등 사용지도, 유해 사이트, 유해영상 차단프로그램 설치

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귀 기울여 주세요.

◈ 내 아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지도해주세요.

◦ 다른 사람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허락을 구하도록 가르칩니다.)

◦ 또래 사이에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성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거절을 표현했을 때에는 즉각 중지하도록 가르칩니다.**

◈ 내 아이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법과 상황별 대처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부모 허락 없이는 누구도(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도록 하세요.

◦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족 외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하세요.

◦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에게는 '다른 어른에게 부탁 하세요' 라고 거절해도 된다고 알려 주세요.

◦ 학교에 너무 이른 시간엔 혼자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학원이나 학교에 혼자 남아 있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집 주변, 등하교길, 학원 오가는 길 등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의를 기울여 지도합니다.

※ 우리 집(학교) 근처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확인방법 -

①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앱

② 본인인증

③ 지도검색

④ 성범죄자 확인

다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 주세요.

○ 자녀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스마트폰 등)의 저장메모리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 저장된 개인정보 및 사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성과 관련된 문자나 메일을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 안내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통, 공유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Q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 · 의료 · 심리치유 지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①직접 소통 가능한 연락처, ②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 ③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쳐화면, ④사이트의 URL, ⑤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Q5.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Q6.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상담 및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 촬영물 유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재유포를 포함하여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Q7.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신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8. 가해자가 가족이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연계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 법률 ·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 · 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0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No!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 · 법률 ·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

양성평등에 관하여

2 양성평등 교육

가 양성평등(존중)교육이란?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차별 없이 존중하는 태도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양성 중 어느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남녀 각각의 타고난 성에 의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평등한 일터를 위한 토크쇼 '간호사 이야기'
(학생, 학부모용 동영상)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온]

-동영상 설명-
과거 간호사가 여성의 직업이라고 여겨졌던 편견을 깨고 남성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소비자나 의료인 등이 남자 간호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부정적 시각은 여전한데요. 평등한 일터를 위한 토크쇼 '간호사 이야기'의 홍지수, 김근호 간호사와 함께 간호사로 일하며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Ypgb_O-yiGI
▶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genderon.kigepe.or.kr/

1.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행동을 바로 잡는다.
: 아이는 부모의 행동과 말,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지워야 한다.

2.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다.
: 아이에게 '남자니까', '여자니까',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여성,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면 성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3. 놀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남아는 운동과 칼싸움, 여아는 소꿉놀이와 고무줄 등 성에 따라 놀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장난감, 학용품을 사줄 때는 부모의 편견 없이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4.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콘텐츠를 파악한다.
: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TV, 인터넷, 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장면은 없는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모니터링 한다.

5. 집안일은 부모가 모두 참여한다.
: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가사와 육아 부분이 가장 크다. 아빠는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집안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알려줘야 한다.

나 자녀에게 양성평등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흡연예방교육 및 감염병 예방교육

3 흡연예방 교육

가 청소년 흡연과 건강

매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 온라인건강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 흡연시작 연령이 12.7세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벤젠, 카드뮴 등과 같은 **제1군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69종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7,000여종의 독성 및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어린 나이의 흡연은 훨씬 더 해롭다.**
  - 어릴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심신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 속 온갖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이 심해지고 신체발달(특히 폐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기의 흡연습관은 성인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니코틴 의존은 알코올(술)이나 다른 의존성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가족의 역할

1)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2)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3)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간접흡연과 3차 흡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4)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관찰하시고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 간접흡연 및 3차 흡연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며,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 **3차 흡연**이란,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이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어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 오염 물질이 배출되어서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

4 감염병 예방 교육

가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초기 증상	등교 중지 기간
홍 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 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부어오른 귀밑이 가라앉을 때까지(약 5일)
인플루엔자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호흡기 증상	열이 내리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약 5~7일)
유행성 각결막염	안구 충혈, 안구통, 눈부심, 가려움증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 (1~2주)
코로나19	콧물, 기침, 두통, 호흡곤란, 인후통 등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나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 학생이 타인에게 전염가능한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

1)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 후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합니다.
3)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다 감염병 전파방지

1)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합시다.

<u>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손 씻기 지도해주세요.(1830 손 씻기-하루 8번이상 30초 손씻기)</u>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폭력, 아동학대 대처방안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부부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

◈ *가정폭력의 유형은?*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모두 포함

◈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유형은?*

1. 신체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2. 정서학대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3. 성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4. 방임, 유기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 *가정폭력 피해자의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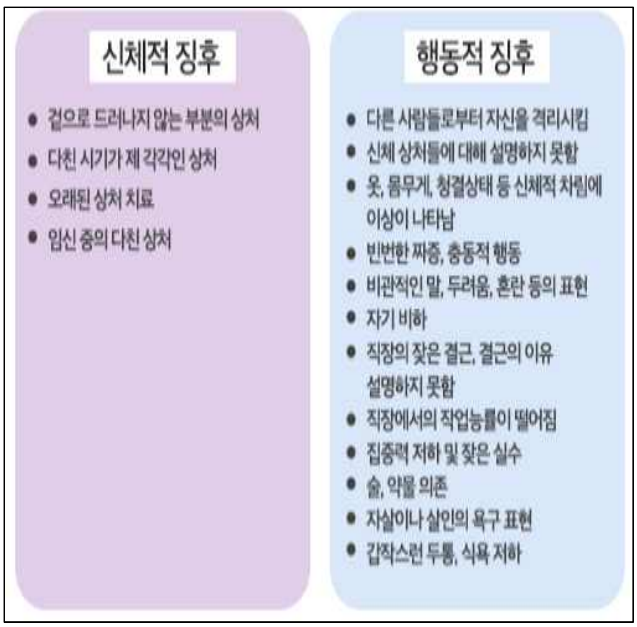

◈ *아동학대 피해자의 징후*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 신고 및 지원기관는?*

☎ 11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고소접수, 수사 등) ☎ 119 (의료적 치료)
☎ 1366 (여성긴급전화) ☎ 1577-9337(건강가정지원센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대처

1. 청소년 자살의 특징

청소년 자살의 특징 →

- 발달 단계 특성상 자살 시도율이 높은 시기이다.
-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
-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살동기를 갖는다.
- 동반 자살 및 모방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
-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2.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상식(오해)과 진실

✖ 대부분의 자살은 특정 사건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원인이다.	✖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	✖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죽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다.
❀ 자살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건과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다수의 자살자들이 자살 시도 전에 자살 의도를 타인에게 이야기하거나 암시한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혼계를 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끊임없는 고민을 한다. “죽을 거야.” 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도 실제 심각한 시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무시하거나 충동성을 돋우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살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자살의 단서(위험 경고)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인 사람은 이러한 단서를 보이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갑자기 이런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할 때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언어적 단서(대화, 일기, 낙서 등)	행동적 단서
✓ 내가 사라져 줄게. ✓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 이젠 정말 끝이야. ✓ 아무 것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 내가 보여 줄거야. 만족하길 바래. ✓ 엄마, 아빠 "미안해." ✓ "안녕"	✓ 갑작스런 행동 변화, 활동 수준 증가 또는 감소 ✓ 물건을 정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동 ✓ 소중한 물건이나 받았던 상장 등을 버리기 ✓ 사람들에게 '안녕'이라고 인사 ✓ 용건 없이 불숙 연락해서 "잘 지내라."고 이야기 함 ✓ 섭식 행동의 장애 - 먹지 못하거나 혹은 과식 ✓ 수면 형태의 변화 ✓ 단정치 못한 외모 ✓ 갑작스런 기분 향상-불안해하던 아이가 평화로워 보임

4.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방법

개 인	가 정
✤ 모든 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 적극적인 문제 해결력 ✤ 감정을 통제하며 적절히 표출하기 ✤ 주변에서 적절한 조언 구하기 ✤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하기 ✤ 자신에 대해 가치를 높게 판단하는 자존감	**✤ 부모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긍정적 지지** **✤ 긍정적인 가족 가치관, 결속력** **✤ 자녀의 장점을 찾아주고 격려하기** **✤ 좋은 양육 환경과 태도**

5. 자살에 관한 도움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상담 전화

한국생명의 전화	www.lifeline.or.kr/1588-9191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www.suicideprevention.or.kr
사랑의 전화	www.counse124.com/1566-2525
한국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739-2000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Ⅰ 특수교육에서 말하는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분리교육을 실시하여 또래 친구들과 필요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학생은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장애 학생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는 밑거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장애인의 반대말을 '정상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상인'을 '장애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쓸 경우에는 '장애인'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정상인'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부를 경우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세요.

Ⅱ 평등과 공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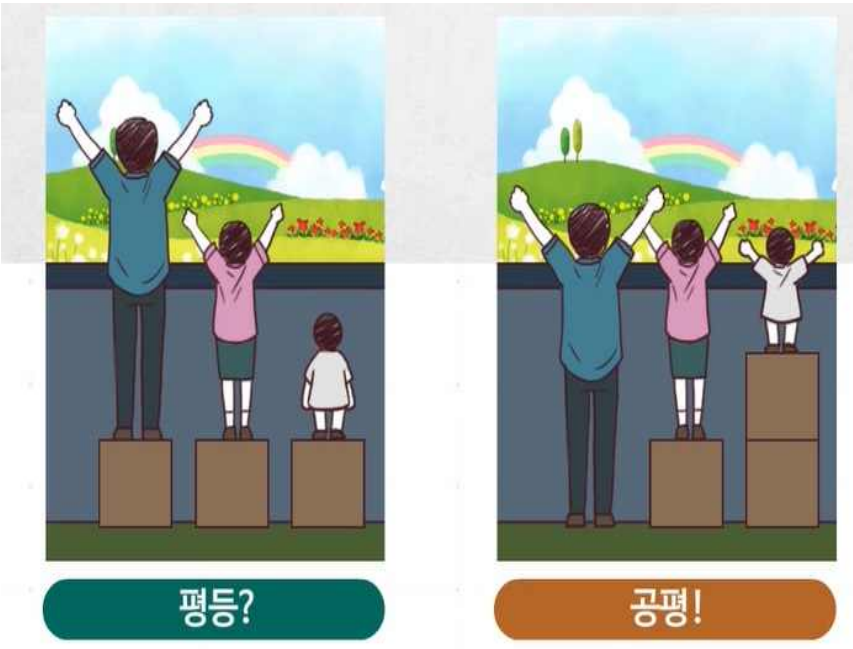

평등은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평등한 발판을 제공한다면 키가 작은 사람은 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반면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맞는 발판을 제공한다면 모든 사람이 멋진 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III 통합교육 Q & A!

▧ 선생님,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장애학생의 분리교육(특수학교나 전일제 특수학급)이 학습적인 면이나 감각적인 면에서는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표는 개개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학생들도 결국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을 통합시켜 교육해야 합니다.**

▧ 선생님,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일반 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보다 특수학급에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는 것이 낫지 않나요?

- 장애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수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 등을 익힙니다. 그리고 **또래 학생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가 장애학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 진단을 받지 않고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호자에게 장애 진단을 받고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보호자의 결정입니다.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장애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진단을 거부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장애정도가 심하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할 것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 아이가 장애학생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뭐라고 말해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학생이 할 수 있는 것과 해내기 어려워하는 것을 살펴본 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장애학생에게 말을 할 때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장애학생을 도와 준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장애인은 disabled person(불가능한/사람)이 아니라
person with disability (사람/장애를 갖고 있는) 입니다.
즉, 같은 사람인데 조금 불편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장애를 먼저 떠올리기 보다는 'person'을 먼저 떠올려 주세요 .

2023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Ⅰ. 방침

1.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
2.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2. 학생, 학부모와의 수시 상담 활동을 통해 위기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한다.
3.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운영한다.
4. 인권 존중, 배려, 봉사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5.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6.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Ⅱ. 세부 추진 계획

1.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어울림 프로그램 및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6차시 이상 실시
- 국어, 도덕, 사회, 통합 등 관련 교과 수업 최대한 활용
- 어울림 프로그램 및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 폭력 예방,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 실시

2.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강화

- 사이버상 공감·의사소통 등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배양에 중점을 둔 교육 실시
- 학교전담경찰관 활용 및 예방 교육 실시

영역	추진 과제	대상	목표	담당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학생·학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안내장 발송 •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 즉시 개입 지원 • 1~6학년 사이버 어울림 수업 실시 / 연간 2차시	1~6	수시	업무 담당자 담임
언어문화개선 활동	•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활동 강화 -친구사랑 및 언어문화개선주간(3,9,10월) 운영 -캠페인, 공모(표어, 글짓기 외) 등 행사 운영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언어문화개선 교육 -교육과정설명회, 안내장 등 활용	전교원 1~6	학기별 1회	

3.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계획

가. 구성: 교감, 학교폭력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2명

나. 역할

1)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117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
- 학교폭력신고 접수 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사실 등을 기록

2) 익산교육지원청 보고

-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익산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 원칙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성폭력 사안 등)일 경우 유선으로 별도 보고
-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3) 학교폭력 사안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 교사는 적극 협조

4) 사안 조사 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 보고

5)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

6) 졸업 전 가해 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 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삭제 심의
-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7) 집중 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재 유보사항 기록 및 관리(2023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다.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1) 사안조사 책임자 및 담당자

- 조사 책임자: 학교장
- 조사 담당자: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

2) 사안의 '발생-조사-보고' 진행 과정

3)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처리내용	비고
학교폭력사건 발생인지	-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		
신고접수 및 학교장, 교육청 보고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교육청(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 보고	책임 교사
↓		
즉시 조치 (긴급조치포함)	- 필요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즉시 격리, 가해 학생이 눈빛·표정 등으로 피해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 관련 학생 안전조치(피해 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신고·병의원 진료 등 / 가해 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성폭력인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식적·신체적 피해 치유 - 사안 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 가능	학교장, 담임교사 등
↓		
사안 조사	-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 조사 실시(관련 학생의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피해·가해 학생 심층 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보고서 작성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 장애 학생에 대한 사안 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임교사전담기구, 담임교사

학교장의 자체 해결 여부 심의	- 법률 13조의 2 제 1항 제 1호~4호를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 전담기구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했을 경우 심의가 들어가며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기구 심의

↓ 자체해결 요건 충족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회부

↓

학교 자체 해결

↓

교육청 보고

→ 미동의

↓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 및 가해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에 보고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조치 실행(학교장)

↓

교육(지원)청 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 전라북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 (법 제12조) 심사·의결 사항
  - · 전라북도교육청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황
  - ·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방과후 학교 포함)
  - ·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중·고 입학시험 포함)
  -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 **(법 제8조)**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평가) 금지

□ **(시행령 제3조)** 입학예정 학생 대상

1)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금지

2)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금지

□ **(법 제11조, 제12조)**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법 14조)**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학교 및 대학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의결요구, 재정지원 삭감,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재정적 제재 부과

○ 법의 적용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 관련 법령 조항 : 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및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연수자료]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1.3.11.)한 2021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4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청렴교육